2004. 4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김 제 시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4 -16

제출년월일 : 2004. 4.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개정이유

가. 2004. 1. 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과

나. 종전 김제시도시계획조례를 현실에 맞추어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관련된 사항

1)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범위확대 (안 제9조제9호 신설)

2)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일반적인 창고시설 설치 허용 (안 별표19 제2호 카목 신설)

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일반적인 창고시설 설치허용 (안 별표23 제2호 카목 신설)

나. 종전 도시계획조례 보완 정비사항

1)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범위확대 (안 제9조제3호 · 제4호 개정, 제7호 · 제8호 신설)

2)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창고

시설설치를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백 제곱미터내에서 가능토록 함(안 별표4 제2호 자목 개정)

3)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일반음식점등의 설치허용 (안 별표19 제2호, 별표23 제2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4.3.22~4.12) : 특기사항 없음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10분의1"을 "30퍼센트"로 하고, 동조제4호중 "10분의1"을 "20퍼센트"로 하며, 동조제6호중 "영 제46조제6항제2호"를 "영 제46조제7항제2호"로, 동조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제7호를 10호로하며, 동조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8.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4 제2호 자목 본문중 "창고시설중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백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19 제2호중 "각호"를 "각호의 1"로 하고, 동호 차목중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로 하며, 동호 카목 내지 파목을 각각 타목 내지 하목으로, 동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별표23 제2호중 "각호"를 "각호의 1"로 하고, 카목 내지 하목을 각각 타목 내지 거목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획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 -------
〈신 설〉	7.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신 설〉	8.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현 행	개 정 안
〈신 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8. (생 략)	10.·11.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중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너비15미터 이상인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백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차. ~ 파. (생 략)	차. ~ 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제56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25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2. ---------- ---------- ---------- ---------- ----------각호의 1의----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차. ---------- ---------- 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 ----------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카. ~ 파. (생 략)	타. ~ 하. (현행 카목 내지 파목과 같음)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제56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25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2. ---------- ---------- ---------- ---------- 별표25 각호의 1의----------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신 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카. ~ 하. (생 략)	타. ~ 거. (현행 카목 내지 하목과 같음)